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2229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2. 1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C는 2005. 10. 21. D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중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06. 1. 27. E 주식회사에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E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2020차전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 30. 'C는 E 주식회사에 22,972,739원 및 그중 21,979,146원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0. 5. 16. 확정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20. 5. 20. C에 대한 위 채권을 재차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20. 5. 25.경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수한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21. 8. 2. 기준 원금 21,979,146원, 이자 등 2,859,006원 합계 24,838,152원이다.

라. 한편, C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13.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G, H, C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3. 30.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72. 8. 8.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약 49년에 이르는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특히 피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과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피고에게 있어 C는 1생의 장성한 아들로 2007. 9. 27. 혼인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C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뿐만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도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녀들이 어머니인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이는 점, ④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와 같은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혜주

**별지목록**

1. 충청남도 청양군

목장용지 2006㎡

1) 청구취지에는 '2021. 7. 5.'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21. 2. 1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